

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3차 조정회의 개최

원사업과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신무성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9월 6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.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◆ 조정성립(2건)

- ▶ (주)한서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 - '안경테 에폭시' 제작(임가공)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118,777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결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료됨.
- ▶ 삼성색소공업(주)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 - 'PVC 팔레트' 1차 제작(임가공)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17,59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결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료됨.

◆ 조정종료(취하)

- ▶ 유진건설(주) 등 1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 후 신고인들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.

◆ 조정불성립

- ▶ (주)동희산기 등 15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이첩 및 조정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 함.

◆ 조정불개시

- ▶ 우신건설(주)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당사자 요건 결여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불개시 처리함.